

기안용지

공고번호 문서번호	주개30321-	전화: 731-6393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경구·순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1. 10. 10			
보조기관	주택국장	협조기관 보고및협조통계관 법무담당관(공고안심사)참사필 회계심사계장 개량계획계장	문서통계	
	주택개발과장			
	개량2계장			
기안책임자	노상우(권승구)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명의	시 장	
제목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및 주민공람공포			
(제 1 안) 내부결재		원본대조필		
1. 우리시관내 도봉구 수유계2, 도봉계2, 미아 계 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 입안하고				
2.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청회및 주민의 의견청취)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간 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주민등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 (별첨)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2회 게재 (2종의 일간지에 조건, 석간)				

<p>도은 : 일기상 신라를 두어 가라)</p>	
<p>다. 공략장소 : 도봉구청 주력과</p>	
<p>라. 공고이산</p>	
<p>1) 예산액 : 1,432,200원</p>	
<p>2) 산출근거 : (3단 x 7cm x 31,000원 x 2개지) x 1.1</p>	
<p>= 1,432,200원</p>	
<p>3)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 주거환경</p>	
<p>개선사업비, 사무비, 사무관리비, 수용비및 수수료</p>	
<p>4)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방송광고공사 청구에 의거 직불</p>	
첨부	1. 공고안 1부
	2. 도시계획 입안도서 1부
<p>(제 2 안)</p>	
수신	공보관
	발신 과장
<p>제목 신문게재의뢰</p>	
<p>1.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p>	
<p>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p>	
<p>일간신문에 공고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제1안) 가, 나, 다, 라항 이기시행</p>	

첨부 1. 공고안 3부
(제 3 안)
수신 도봉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및 주민의견 청취
1. 귀구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코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
확인원에 도시계획 입안지로 표기발급할 것이며,
2. 관계서류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기 바라며 공고문
사본을 구청 및 동사무소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91.9. 까지 주민의견서 첨부하여 보고할 것.
첨부 1. 공고문 사본 2부
2. 도시계획안 도서 각2부.
(제 4 안)
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과장
제목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입안및 주민공람공고 통보
1. 우리시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p>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예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부서의 의견을 91.10. . 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본 기한내 제출치 않을시는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하겠으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p>
<p>첨부 1. 공고안 1부</p>
<p>2. 입안도면 1부. 끝.</p>
<p>수신처 도시계획과 ,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p>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공 고 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지정 코져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²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1. . . (공람)

서울특별시 장

가. 공람기간 : 1991.10. . - 1991. 10. (14일간)

나. 공람내용

- 도시계획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공람및 의견서 제출장소
도봉제2	도봉구 도봉동 627번지 일대	5,578	도봉구청 주택과
수유제2	도봉구 우이동 108번지일대	15,020	"
미아제1	도봉구 미아동 791번지일대	10,756	"

다.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都市計劃立案調書

1. 目的

- 老朽不良建築物이 密集된 地域 또는 公共施設의 整備狀態가 不良하여 住居環境이 劣惡한 地域을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
- 都市低所得 住民의 福祉增進과 都市環境을 改善코자 함.

2. 要求內容

區 分	計	區 域 新規指定	區域 變更	公園變更	備 考
總 計	3	3			
道峰區	3	3			

○ 現況

蓮 番	區域名	對象 建物 (棟)	家口數(家口)			要請者	同意率(%)
			計	家屋主	賃入者		
1	道峰 第2	39	193	39	154	住民	91
2	水俞 第2	78	257	78	179	"	83
3	彌阿 第1	78	193	57	136	"	92.3

道峰洞 第2 住居環境改善地區

1. 現 況

- 位 置：道峰區 道峰洞 86 番地 一帶
- 土 地 及 建 築 物

區 分	上 地 (㎡)			建 物 (棟)		
	計	國.公有地	私有地	計	有許可	無許可
住民要求	5,578	5,578		110		110
檢 討 案	5,578	5,578		110		110

- 都市計劃現況：自然綠地地域.

2. 都市計劃立案內容

- 地區 新規指定

區 分	面 積 (㎡)	備 考
住民要求	5,578	
檢 討 案	5,578	

- 都市計劃施設 變更事項：變更 없음.

區 分	既 定	變 更	變 更 後	備 考

3. 地區指定 事由

- 住 民 要 求 案：撤去移住民인 低所得住民 集團居住地로서 道峰1 地區에 隣接한 住居環境이 매우 劣惡한 地域이므로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 要望.
- 檢 討 意 見：都市基盤施設이 매우 脆弱한 地域으로 住居環境 改善地區로 指定하여 住居環境 改善코자 함.

도봉 제2지구

도 봉 구

성군관대 야구장

농림부

도봉 제2 지구

한천

도봉제1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5,570

도봉시장

水俞洞 第2 住居環境改善地區

1. 現 況

- 位 置 : 道峰區 牛耳洞 108番地 一帶
- 上 地 契 建 築 物

區 分	上 地 (m ²)			建 物 (棟)		
	計	國.公有地	私有地	計	有許可	無許可
住民要求	15,020	1,144	13,876	88	78	10
檢 討 案	15,020	1,144	13,876	88	78	10

- 都市計劃現況 : 一般住居地域.最高 高度地區(5層以下)

2. 都市計劃立案內容

- 地區 新規指定

區 分	面 積 (m ²)	備 考
住民要求	15,020	
檢 討 案	15,020	

- 都市計劃施設 變更事項 : 變更 없음.

區 分	既 定	變 更	變 更 後	備 考

3. 地區指定 事由

- 住 民 要 求 案 : 隣近 地域中 申請地域만이 不良建物 密集地域으로 放置되어 道路幅 狹小等 都市基盤施設이 脆弱하여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 要望.
- 檢 討 意 見 : 都市基盤施設이 매우 脆弱한 地域으로 住居環境 改善地區로 指定하여 住居環境 改善코자 함.

제일은행인수환

수유재건축

이래서부터
강남구청
삼화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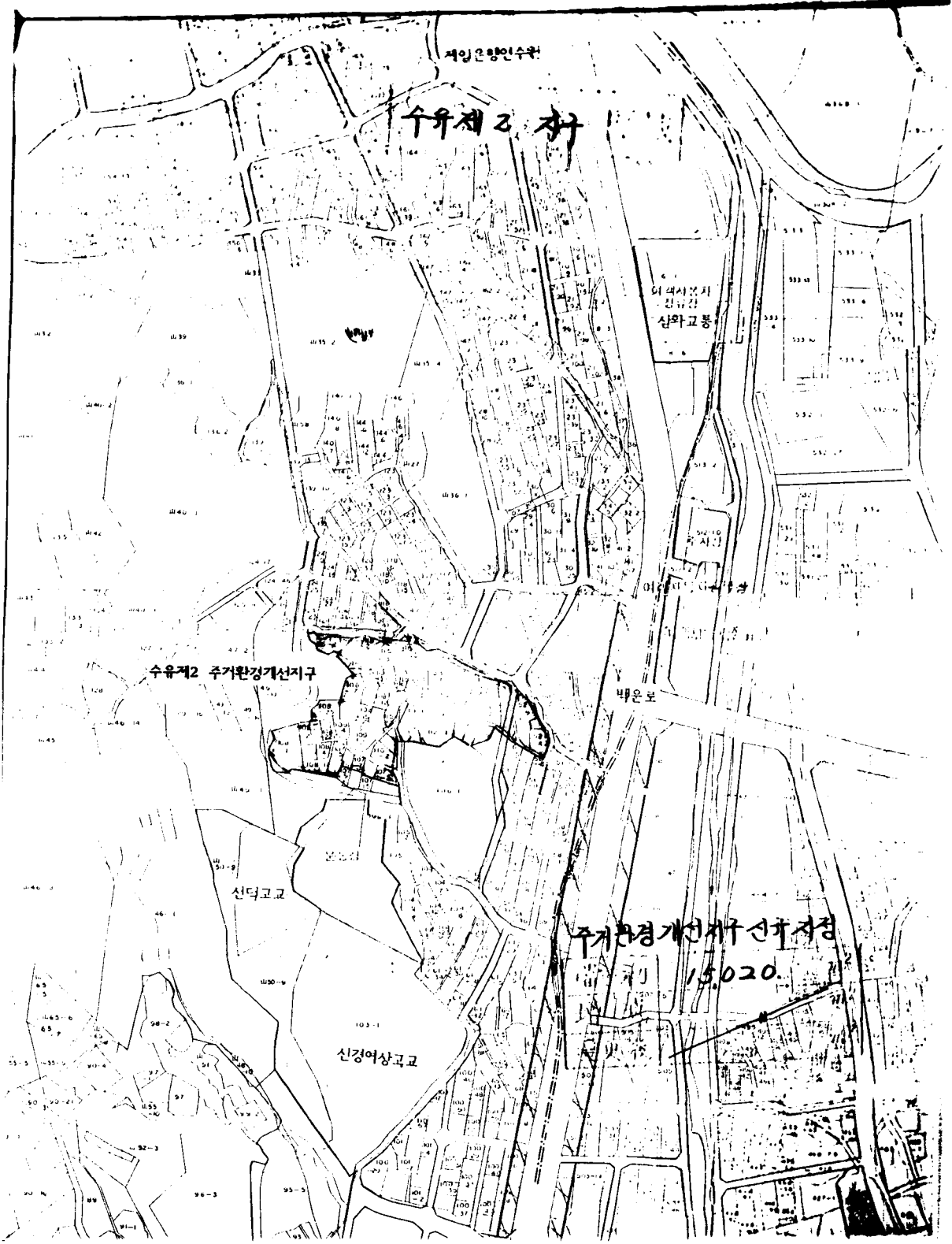
수유재2 주거환경개선지구

백운로

신덕고교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축지점
15020

신경여상교교



彌阿洞 第 1 住居環境改善地區

1. 現 況

- 位 置 : 道峰區 彌阿洞 791番地 一帶
- 土 地 與 建 築 物

區 分	土 地 (m ²)			建 物 (棟)		
	計	國公有地	私有地	計	有 許 可	無 許 可
住 民 要 求	10,756	1,737	9,019	78	11	67
檢 討 案	10,756	1,737	9,019	78	11	67

- 都 市 計 劃 現 況 : 一般住居地域, 風致地區, 北漢山自然公園

2. 都 市 計 劃 立 案 內 容

- 地 區 新 規 指 定

區 分	面 積 (m ²)	備 考
住 民 要 求	10,756	現 地 改 良
檢 討 案	10,756	

- 都 市 計 劃 施 設 變 更 事 項

區 分	既 定	變 更	變 更 後	備 考

3. 地 區 指 定 事 由

- 住 民 要 求 案 : 撤去移住民인 低所得住民 集團居住地로써 住居環境이 매우 劣惡한 地域이므로 住居環境改善 地區指定 要望
- 檢 討 意 見 : 都 市 基 盤 施 設 이 매우 脆 弱 한 地 域 으 로 住 居 環 境 改 善 地 區 로 指 定 하 여 住 居 環 境 改 善 코 자 합.

미아제1지구

도

봉

구

미아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차자정

10.156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미양국교

